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 조회 기본약관 (기업고객용)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이하 “기업고객”라 한다)와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은행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금융정보 조회”란 기업고객이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제6조에서 명시하는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을 한 경우 은행이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금융정보 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조회 대상 계좌신청)

- ①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등 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에서 금융정보 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청권한 확인 후 신청결과를 기록합니다.
- ③ 기업고객은 본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4조에서 명시하는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에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신청)

- ① 기업고객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에서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기업고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OTP발생기인증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기업고객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기업고객이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계좌번호 (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 ④ 기업고객은 본인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 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8조 (금융정보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잔액조회 :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 ② 거래내역조회 :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조회

제9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 ①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기업고객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해당 내역을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은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기업고객의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합니다.
- ③ 기업고객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기업고객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최대 1년 이내 단위로 기업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 ① 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8조 ①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 ① 기업고객은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서비스 채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기업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업고객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기업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12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기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 12. 16일부터 시행합니다.